

# 화성동탄2 A-54·A57-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07.05.)

'19.9.27.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중복신청불가]** 금회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하는 화성동탄2 A-54·A57-1블록 행복주택은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므로,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A-54·A57-1블록 중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두 개 블록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고는 미계약 세대(재임대세대 포함)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소득·총자산요건 배제 등) 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완화기준은 해당 공고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화성동탄2 A-54·A57-1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대학생 계층

- 대 학 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② 청년 계층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4.07.06~2005.07.0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완화조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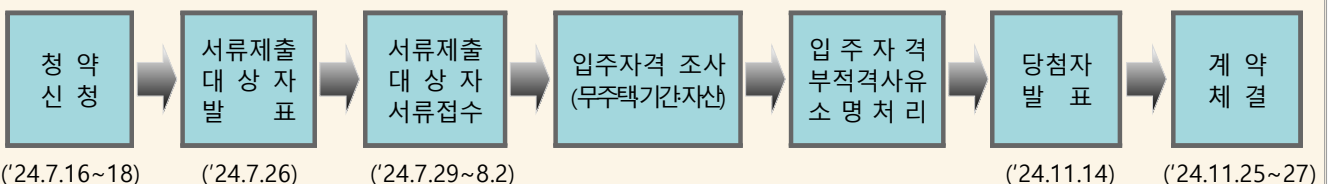
###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1959.07.05 이전)

###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금회 화성동탄2 A-54 · A57-1블록 행복주택은 아래와 같이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① (소득 및 총자산요건 완화)

구 분	완 화 내 용
소득 요건	소득요건 배제
총자산 요건	총자산요건 배제 단,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단,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 등을 위해 소득 및 자산 조회 시행

② (기간요건 완화)

공급계층	입주자격	기 존	완 화
청년(사회초년생)	소득 업무 종사기간	5년 이내	7년 이내
	혼인기간	7년 이내	10년 이내
신혼부부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9세 이하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9세 이하

-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완화기준 적용)**,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2회차)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회 갱신 시에는 소득, 자산 초과 시에도 임대조건 할증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2회에는 예비자가 없을 경우에만 할증없이 재계약 허용됩니다. (3회차부터는 일반조건 충족 시 갱신 가능)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본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청약상담은 전용 상담전화(031-250-8483 ※ 금회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임시번호로 7.16까지만 상담가능, 이후 연결불가) 및 LH 콜센터(1600-1004, 1670-0003)에서 가능합니다.

## 1. 건설위치

임대유형	블록명(단지명)	단지 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행복주택	화성동탄2 A-54BL (동탄2 LH 38단지 행복주택)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5가길 35	1,350	'23.11
	화성동탄2 A57-1BL (동탄2 LH 40단지 행복주택)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8길 15	850	'22.06

- 금회 모집공고 당첨자는 '25.1월 입주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10.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공급일정

청약 신청 (PC/모바일)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전자계약)
'24.07.16(화) 10:00 ~ '24.07.18(목) 18:00  ※ 24시간 신청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청약 신청내용 변경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 (청약 마감이후 변경불가)	'24.07.26(금) 17:00 이후  <b>(확인방법)</b>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조회	'24.07.29(월) ~ '24.08.02(금)  <b>(서류제출방법)</b> <b>등기우편</b>  <b>(등기우편 발송주소)</b>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화성동탄2 A-54-A57-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24.08.02(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b>※ 일반우편 접수불가</b>	'24.11.14(목) 17:00 이후  <b>(확인방법)</b>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조회  또는 ARS(1661-7700)	'24.11.25(월) 10:00 ~ '24.11.27(수) 17:00  <b>(계약방법)</b>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b>(현장계약)</b> '24.11.25(월) 10시~16시 (12시~13시 제외) ※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청약 신청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합니다. **[단, 7.18(목)은 18시 전까지]**
- **(현장접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간 : '24.7.18(목)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소 :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7. 신청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
  - 현장 접수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4.07.26(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및 서류제출안내문 확인 방법**
  - P C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클릭 → 『청약결과 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7.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24.08.02(금)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 A-54블록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당 계약면적(m <sup>2</sup> )				합계	임대조건			전 환 가 보 증 금 한 도 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 대 조 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입주자 (554호)	예비자 (478호)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천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천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21Aa/ 21Ab	대 학생	177	90	21.33	12.8020	2.5514	9.0182	45.7016	24,820	1,241	23,579	103.410	(+) 4,000	28,820	80.070	6		
	청년(소득無)								24,820	1,241	23,579	103.410	(-) 20,000	4,820	161.740			
	청년(소득有)								26,280	1,314	24,966	109.500	(+) 5,000	31,280	80.330			
	주거급여 수 급 자	35	35						21,900	1,095	20,805	91.250	(+) 2,000	23,900	79.580	20		
21B	대 학생	179	90	21.14	12.6879	2.5287	8.9379	45.2945	24,480	1,224	23,256	102.000	(+) 4,000	28,480	78.660	6		
	청년(소득無)								24,480	1,224	23,256	102.000	(-) 20,000	4,480	160.330			
	청년(소득有)								25,920	1,296	24,624	108.000	(+) 5,000	30,920	78.830			
	주거급여 수 급 자	24	24						21,600	1,080	20,520	90.000	(+) 2,000	23,600	78.330	20		
26A	대학생	7	28	26.18	15.7129	3.1315	11.0688	56.0932	31,280	1,564	29,716	130.330	(+) 9,000	40,280	77.830	6	철근 콘크	
	청년(소득無)								31,280	1,564	29,716	130.330	(-) 26,000	5,280	206.160			
	청년(소득有)								33,120	1,656	31,464	138.000	(+) 10,000	43,120	79.660			
	주거급여 수 급 자	1	4						27,600	1,380	26,220	115.000	(+) 6,000	33,600	80.000	20	리트	
37Aa/ 37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53	26	37.95 37.86	22.7771 22.7231	4.5394 4.5287	16.0451 16.0070	81.3116 81.1188	53,200	2,660	50,540	221.660	(+) 22,000	75,200	93.320	6~10	라멘 구조	*25.1 (예정)
37Aa	고 령 자 (주거약자용)	4	16	37.95	22.7771	4.5394	16.0451	81.3116	50,540	2,527	48,013	210.580	(+) 21,000	71,540	88.080	20	/	
37Ab	청년(소득無)	-	4	37.60	22.5670	4.4976	15.8971	80.5617	44,880	2,244	42,636	187.000	(+) 18,000	62,880	82.000	6	지역 난방	
	청년(소득有)								47,520	2,376	45,144	198.000	(-) 37,000	7,880	294.91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	4						52,800	2,640	50,160	220.000	(+) 20,000	67,520	81.330			
	주거급여 수 급 자	1	4	39,600	1,980	37,620	165.000	(-) 39,000	8,520	311.750								
44Aa/ 44A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1	21	44.06 44.07	26.4443 26.4503	5.2702 5.2715	18.6283 18.6326	94.4028 94.4244	62,000	3,100	58,900	258.330	(+) 22,000	74,800	91.660	6~10		
44Aa	고 령 자 (주거약자용)	6	24	44.06	26.4443	5.2702	18.6283	94.4028	58,900	2,945	55,955	245.410	(+) 25,000	83,900	99.570	20		
45Aa/ 45B	청년(소득無)	2	8	45.62	27.3806	5.4569	19.2879	97.7454	54,740	2,737	52,003	228.080	(+) 23,000	77,740	93.910	6		
	청년(소득有)								57,960	2,898	55,062	241.500	(-) 46,000	8,740	362.24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3	26						45.61	27.3746	5.4557	19.2837	97.7240	64,400	3,220			
	주거급여 수 급 자	3	12						48,300	2,415	45,885	201.250	(-) 48,000	9,960	381.500			
45Aa	고 령 자 (주거약자용)	-	4	45.62	27.3806	5.4569	19.2879	97.7454	61,180	3,059	58,121	254.910	(+) 27,000	91,400	110.830	6~10		
													(-) 54,000	10,400	425.830	20		
													(+) 20,000	68,300	84.580			
													(-) 40,000	8,300	317.910			
													(+) 26,000	87,180	103.240			
													(-) 51,000	10,180	403.660			

(표 다음페이지에 계속)

- 청약신청은 공급형별[21Aa/Ab형, 37Aa/B형, 44Aa/Ab형, 45Aa/B형]로 청약신청하며, 동호 추첨 시 무작위 배정됩니다.
- 21Aa/Ab, 21B, 26A형의 "대학생계층"의 공급물량과 "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공급 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1형 세대에는 전기쿡탑 2구, 냉장고, 책상, 옷장이 설치되며, 26형 세대에는 전기쿡탑 2구, 드레스룸이 설치, 37,44,45형 세대에는 전기쿡탑 3구, 드레스룸이 설치됩니다. (가스쿡탑 등 가스 활용 기구 사용 불가)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당 계약면적(m <sup>2</sup> )					임대조건				전 환 가 능 보 증 금 한 도 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 대 조 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천원)		임 보 증 금 (천원)	월임대료 (천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45Ab	청년(소득無)	-	4	45.04	27.0324	5.3874	19.0427	96.5025	54,060	2,703	51,357	225.250	(+) 23,000	77,060	91.080	6		
	청년(소득有)								57,240	2,862	54,378	238.500	(-) 45,000	9,060	356.50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8	18						63,600	3,180	60,420	265.000	(+) 24,000	81,240	98.500			
	주거급여 수 급 자	6	24						47,700	2,385	45,315	198.750	(-) 48,000	9,240	378.500			
45Ab	고 령 자 (주거약자용)	3	12	45.04	27.0324	5.3874	19.0427	96.5025	60,420	3,021	57,399	251.750	(+) 27,000	90,600	107.500	6~10		
													(-) 53,000	10,600	419.580			
													(+) 20,000	67,700	82.080			
													(-) 40,000	7,700	315.410			
													(+) 25,000	85,420	105.910	20		
													(-) 50,000	10,420	397.580			

### ■ A57-1블록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당 계약면적(m <sup>2</sup> )					임대조건				전 환 가 능 보 증 금 한 도 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 대 조 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천원)		임 보 증 금 (천원)	월임대료 (천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16A	대 학 생			16.70	9.4442	1.7907	7.4385	35.3734	17,340	867	16,473	72.250	(+) -	17,340	72.250	6		
	청년(소득無)	25	25						17,340	867	16,473	72.250	(-) 14,000	3,340	113.080			
	청년(소득有)								18,360	918	17,442	76.500	(+) -	18,360	76.500			
21AH/ 21AL	대 학 생			21.14 21.36	11.9551 12.0795	2.2668 2.2904	9.4162 9.5142	44.7781 45.2441	23,460	1,173	22,287	97.750	(+) 3,000	26,460	80.250	6		
	청년(소득無)	15	15						23,460	1,173	22,287	97.750	(-) 19,000	4,460	153.160			
	청년(소득有)								24,840	1,242	23,598	103.500	(+) 4,000	28,840	80.160			
26AH/ 26AL	대학생			26.06 26.25	14.7375 14.8449	2.7944 2.8149	11.6076 11.6923	55.1995 55.6021	28,900	1,445	27,455	120.410	(+) 7,000	35,900	79.570	6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25.1 (예정)
	청년(소득無)	32	32						28,900	1,445	27,455	120.410	(-) 24,000	4,900	190.410			
	청년(소득有)								30,600	1,530	29,070	127.500	(+) 7,000	35,900	79.570			
	주거급여 수 급 자	22	22						25,500	1,275	24,225	106.250	(-) 24,000	4,900	190.410			
26B	고 령 자 (주거약자용)	38	38	26.25	14.8449	2.8149	11.6923	55.6021	32,680	1,634	31,046	136.160	(+) 8,000	38,600	80.830	20	/	
													(-) 21,000	4,500	167.500	20	지역	
													(+) 10,000	42,680	77.820	20	난방	
													(-) 27,000	5,680	214.910			
36AH/ 36AL	청년(소득無)	1	4	36.50 36.72	20.6415 20.7659	3.9140 3.9375	16.2579 16.3558	77.3134 77.7792	40,800	2,040	38,760	170.000	(+) 16,000	56,800	76.660	6		
	청년(소득有)								43,200	2,160	41,040	180.000	(-) 34,000	6,800	269.16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	32						48,000	2,400	45,600	200.000	(+) 17,000	60,200	80.830			
36B	고 령 자 (주거약자용)	5	20	36.72	20.7659	3.9375	16.3558	77.7792	45,600	2,280	43,320	190.000	(-) 36,000	7,200	285.000	6~10		
													(+) 20,000	68,000	83.330			
													(-) 40,000	8,000	316.660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8	38	44.70	25.2788	4.7933	19.9103	94.6824	58,400	2,920	55,480	243.330	(+) 19,000	64,600	79.160	20		
													(-) 38,000	7,600	300.830			
													(+) 25,000	83,400	97.490	6~10		
													(-) 49,000	9,400	386.240			

- AH타입과 AL타입은 구조는 같으나 일부 벽체 치수 차이가 있으며, 공급형을 통합하여 청약신청을 받아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16A, 21AH/AL, 26AH/AL형의 "대학생계층"의 공급물량과 "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공급 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16A, 21AH/AL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냉장고장 포함), 책상이 설치됩니다.
- 16A형은 세탁기 설치공간이 별도로 없으므로, 단지 내 공용(코인)세탁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팸플릿 참고)

## ■ 공통사항

- 금회 공고는 우선공급은 없으며, 입주자격완화(소득·총자산 배제 등)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 금회 공고는 직전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 및 해지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보수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 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공급호수가 0인 경우**[예 : A-54블록의 45Aa(고령자-주거약자용)형] **현재 공가가 없는 공급형으로, 형별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자가 대기 중일 수 있으며 해당 공급형에 예비입주자로 신청·선정되신 경우 후순위 예비입주자로 등록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후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 계약안내드리며,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 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으로,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5.1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 ② 신청자의 배우자
-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 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안내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통합공임,국민↔국민,영구↔영구,행복↔행복)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본 공고는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하는 공고로 본인이 해당하는 계층에서 [완화조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단, 최초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아래 기본자격([일반조건])을 충족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내용에 따르며, 갱신계약 세부 적용 기준과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참고)

자격구분	1회차 불충족	2회차 불충족
소득·총자산 배제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허용(할증 미적용)

## 4-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㉔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 ①-㉓ (대 학 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㉔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일반조건】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완화조건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소득요건 배제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완화조건] 총자산요건 배제 (단, 신청자 본인이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일반조건】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은**

적용 대상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li> <li>• 신청자의 부모</li> </ul>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 제외)</li> <li>• 신청자의 직계비속</li> <li>•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li> </ul>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 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순위 → 추천**

※ (54블록) 21Aa/Ab, 21B, 26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57-1블록) 16A, 21AH/AL, 26AH/AL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순위**

1순위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4-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㉔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㉔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사람

- ①-㉔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7.6.~2005.7.5.)
- ①-㉔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일반조건】**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 표 참조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완화조건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4,179,557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완화조건】 총자산요건 배제 (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708만 원 이하일 것)**  
**【일반조건】**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7,3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의 임대조건이 적용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세대	비 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li> <li>• 신청자의 직계존속</li> <li>•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li> </ul>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li> </ul>	-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 (54블록) 21Aa/Ab, 21B, 26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 (57-1블록) 16A, 21AH/AL, 26AH/AL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순위**

1순위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함.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4-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㉔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㉔와 ②~④를, 한부모가족은 ①-㉔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 ①-㉔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태아포함)
- ①-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㉔ (한부모가족)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태아포함)

②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일반조건】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 표 참조

구분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완화조건
		일반조건		
(예비)신혼부부	2인	5,957,283원 이하	110%	소득요건 배제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한부모가족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구분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완화조건
		일반조건		
맞벌이 (예비)신혼부부	2인	7,040,426원 이하	130%	소득요건 배제
	3인	8,638,379원 이하	120%	
	4인	9,898,160원 이하	120%	
	5인	10,530,085원 이하	120%	
	6인	11,475,938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 맞벌이 945,8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완화조건】 총자산요건 배제 (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708만 원 이하일 것)**

【일반조건】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34,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내 용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반드시 공고문 [10. 유의사항의 '기타사항' 확인])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순위 → 추천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b>화성시</b> 또는 연접 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b>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b> 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함.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4-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사람

①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일반조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완화조건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소득요건 배제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완화조건] 총자산요건 배제 (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708만 원 이하일 것)

【일반조건】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34,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용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추천

## 4-5. 주거급여수급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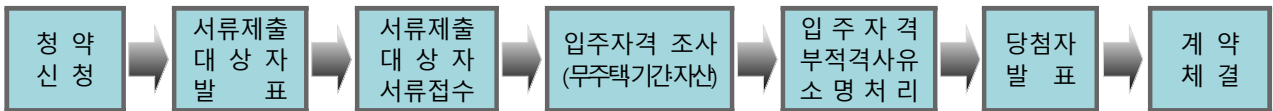
-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내 용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추첨

## 5. 입주자 선정절차 및 청약 신청방법

### ■ 입주자 선정절차



### ■ 입주자격 검증

- 금회 모집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등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차 보유 등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기간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신청순위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PC) 청약 방법

###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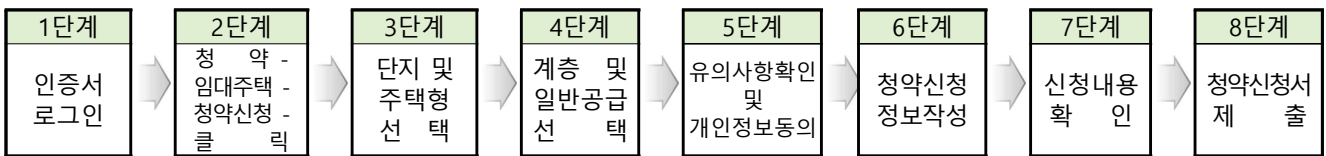
####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② LH청약플러스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 ③ 인터넷신청



###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4.7.16(화) 10:00 ~ 7.18(목)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단, 7.18(목)은 18시 전까지]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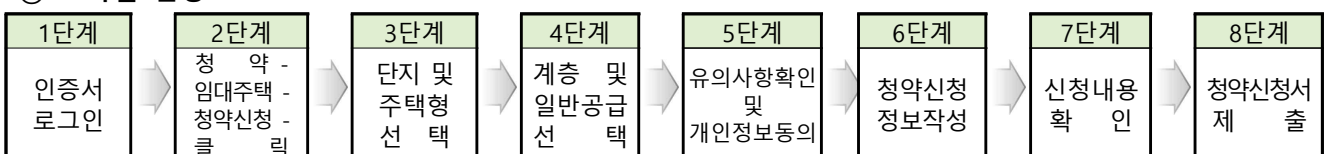
####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 IOS폰 이용고객 → App스토어에서 앱 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Play스토어에서 앱 다운

####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http://www.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연습하기 →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③ 모바일 신청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청약 건을 PC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하며, PC에서 청약한 건을 모바일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4.7.16(화) 10:00 ~ 7.18(목)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단, 7.18(목)은 18시 전까지]
- 청약신청, 당첨자 확인, 계약내역 조회, 보증금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접수 방법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기 간	7.18(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약 도	
장 소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대 중 교통편	<p>(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도보 5분 거리) (버 스) 오리역 하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버스 : 60, 101, 116-3, 300, 390, 520, 700-2, 720-1A, 720-2, 820</li> <li>-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9000-1</li> </ul>		
구 비 서류	<p>□ <b>아래 서류와 [7.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미지참 시 접수 불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li> <li>•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li> <li>• 그 외의 자 신청 시(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li> </ul>		
□ 현장접수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반드시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7. 신청서류] 참고)			

## 6.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7.26(금)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 C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클릭 → 『청약결과 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일반우편 접수 불가)**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분실 등의 우려로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4.7.29(월) ~ 8.2(금) [24.8.2(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발송 ([7. 신청서류] 참고)

\* 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화성동탄2 A-54·A57-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07.0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7.05)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현장청약 접수자의 경우 현장방문시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제출)서류

※ **65세 이상 등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기본서류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장소로 내방**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b>(인감증명방식)</b>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b>(본인서명방식)</b>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b>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b> ③ <b>공 통</b>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점에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신청자 전원 필수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발급) (주소변동사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li> <li>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li>※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등본 모두 제출</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예비입주자 중복신청 불가사항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의방법) 내용 확인 후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li> <li>※ (주의) 확인(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li> </ul>	1통 (별지 1-1, 1-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li> <li>*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li> <li>*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li> <li>*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li> <li>(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li> <li>※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li> </ul>	각 1통 (별지 1-3)
해 당 자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li> <li>•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li> <li>&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li> <li>•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li> <li>• "신혼부부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li> <li>•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li> <li>※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li> <li>※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거소사실증명서) 등 추가 제출</li> </ul>	1통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li> <li>•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li> </ul>	각1통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상자(계층)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구비서류	발급처	
대 학 생 계 층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학증명서</li> <li>-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li> <li>-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li> <li>• 졸업예정증명서</li> </ul>	해당 대학  별지 2호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li> <li>-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li> <li>-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li> </ul>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청 년 계 층	<b>청년 (19세이상~39세이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민연금 가입증명서</b>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li> <li>• <b>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li> </ul>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b>[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민연금 가입증명서</b>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li> <li>• <b>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li> </ul>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b>[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li> <li>• <b>국민연금 가입증명서</b>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li> <li>• <b>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li> </ul>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b>[예술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li> <li>• <b>국민연금 가입증명서</b>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li> <li>• <b>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li> </ul>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b>•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li> <li>-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li> </ul>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b>•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완화조건】 총 7년이 경과한 사람 중</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li> <li>2)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사람 중 기간 제외가 필요한 자 - (복무 중인 경우) 복무확인서 / (복무 완료인 경우) 병적증명서 ※ 해당 산업체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출력</li> </ol>	해당 학교  병무청, 민원24
	<b>•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b>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b>신혼부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b>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li> </ul>	행정복지센터
	<b>예비 신혼부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b></li> <li>• <b>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b></li> <li>•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b>신분증 사본</b> 제출</li> <li>• 대표신청자의 <b>혼인관계증명서</b>(※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가능) ※ 혼인 후 혼인관계증명서 재제출(입주시점에 미제출 시 당첨 및 계약 무효 처리됨)</li> <li>※ 입주 시 혼인 후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b>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b>(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추가 제출 (입주시점에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li> </ul>	별지 3-1호 별지 3-2호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가 아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로 신청한 경우</li> </ul>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li> <li>※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li> <li>※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li> </ul>	국민연금공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li> <li>※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li> </ul>	해당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li> <li>*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li> <li>*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li> </ul>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li> </ul>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li> </ul>	행정복지센터
고령자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없음</li> </ul>	

##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발표 [24. 11. 14(목) 17:00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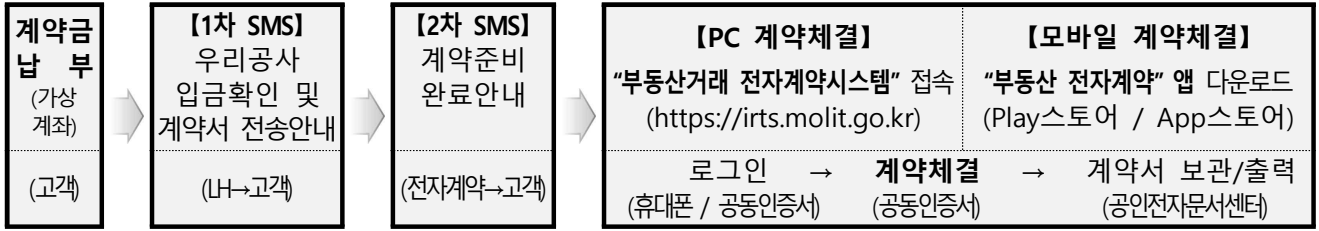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천합니다.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센터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 ■ 계약안내

#### □ 전자계약 체결 [24. 11. 25(월) 10:00 ~ 11. 27(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공임·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드리며, 예비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폰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체결 [24. 11. 25(월) 10:00 ~ 16:00]**

- 계약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li> <li>•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li> <li>•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li> <li>•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배우자가 대리계약 시</b>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li> <li>• <b>배우자 외의 자가 대리 계약 시</b> <b>(인감증명방식)</b>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일 것),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b>(자필서명방식)</b>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공사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분)</li> </ul>

## 9. 무주택 확인 기준 및 소득·자산 항목 자료 출처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총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li> <li>•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 공공기관 대출금</li> <li>•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li> <li>•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li> <li>•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b>자동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ul>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li> <li>-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li> <li>-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li> <li>-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li> <li>-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li> </ul>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li> <li>-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li> <li>-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li> <li>-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li> </ul>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근로자 근로내역</li> </ul>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li> </ul>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li>-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li> <li>-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li> </ul>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ul>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ul>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li>- 사업자등록증</li> </ul>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li> </ul>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li> </ul>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정보 조회결과</li> </ul>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li> <li>-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li> <li>-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li> <li>-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li> </ul>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기타 자산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li> <li>-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li> </ul>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기관 대출금</li> <li>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li> <li>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li> <li>임대보증금</li> </ul>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10.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p>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p>	<p>■ <b>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b>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b></li>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li> </ul> <table border="1" data-bbox="284 571 1469 734">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li> <li>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li> </ul> <p>■ <b>재청약 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복주택 입주자는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동일 면적형의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신분을 변경하여 갱신)</li> <li>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li> </ul>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p>예비입주자</p>	<p>■ <b>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li> </ul>								
<p>갱신계약 등</p>	<p>■ <b>갱신계약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li> <li>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li> <li>* 다만, 아래 계층별 입주자격 요건은 갱신 시 미적용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li> <li>- 청년계층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li> <li>-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li> </ul> </li> <li>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li> <li>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b>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b></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li> <li><b>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기준에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b></li> </ul> <table border="1" data-bbox="296 389 1469 613">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3">할증비율</th> </tr> <tr> <th>기준초과자의 1회차 재계약</th> <th>기준초과자의 2회차 재계약</th> <th>기준초과자의 3회차 이상 재계약 (일반입주 재계약 요건과 동일)</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 colspan="2" rowspan="3">할증 없음</td> <td>11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li> </ul>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기준초과자의 1회차 재계약	기준초과자의 2회차 재계약	기준초과자의 3회차 이상 재계약 (일반입주 재계약 요건과 동일)	10%이하	할증 없음		110%	10%초과 30%이하	120%	30%초과	13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기준초과자의 1회차 재계약	기준초과자의 2회차 재계약	기준초과자의 3회차 이상 재계약 (일반입주 재계약 요건과 동일)													
10%이하	할증 없음		110%													
10%초과 30%이하			120%													
30%초과			13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li> <li>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li> </ul>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li> <li>*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li> </ul>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b>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b></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i> </ul>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b></li> <li>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li> </ul>															
자동차 등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b></li> <li>*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li> <li><b>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4년의 경우 3,708만 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a href="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a>)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p>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등 비용 부과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li> <li>*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li> <li>•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li> <li>•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li> <li>•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 <b>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수속 시 혼인 관련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 각각 제출) 각 1부씩]</b>를 제출하여야 하며, <b>혼인신고 후 처리기간이 수일이상(1~2주)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어 입주 전까지 준비</b>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혼인신고 신청 중인 접수증은 제출 불가함)</li> <li>•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li> <li>•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li> <li>•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li>•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li> <li>•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li> <li>•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li> </ul>
지구 및 단지여건	<p>■ 지구 내·외부여건[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리츠활용 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당해 지구 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 도로, 근린공원, 하천, 단지내도로, 단지내조경 등 단지 내외부 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당해 지구 내 공공청사는 복합커뮤니티시설,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화성시청 및 관련 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경부고속도로 오산IC와 기흥IC, 기흥동탄IC가 당해 지구 남측과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할 관청의 시행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동탄JC지점내에 폐1위치에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를 설치하여 생활여건에 따른 냄새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지구 인근 남서측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단에너지시설(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당해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당해 지구 내에는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42개소)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왕창)이 존치 예정입니다.</li> <li>• 당해 지구 내 교량, 지하철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당해 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공급처리시설(변전소, 케이블 헤드 등), 열공급설비(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음식물처리장 등 폐기물처리 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li> <li>•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p>■ 단지 외부여건</p>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외부 보행로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외의 옹벽,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p><b>[A-54블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지 북측 산지에 묘지가 위치하며 묘지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북측 대지경계 외측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지정기간 및 입주 이후에도 당 사업부지 인근 부지(A51-1,2,A52,A55,종26)에서 아파트 및 종교시설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li> <li>• 지구 인접 기차공 및 미차공 현장으로 인해 건설장비가 통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북측 골프장(기흥CC)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사업부지 기준으로 동남측 4.2km(직선거리) 동탄JC 위치에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처리시설, 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li> </ul> <p><b>[A57-1블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 주변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의 일조 및 조망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과 인접하여 근린공원, 공공공지, 연결녹지 등 공공시설 조성계획이 있으며,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변경에 따라 해당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 북서측 약 4.9km 직선거리에 동탄역(SRT, GTX-A)가 위치하고 있습니다.</li> <li>• 단지 서측에는 35m도로가 계획되어있으며 유치원용지, 초등학교용지, 고등학교용지 단독주택용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단지 북서측에는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li> </ul> <p>■ <b>단지 내부여건</b></p> <p><b>[A-54블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 녹지,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단지 내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계획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재료·형태·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3882 옥상층(안테나) / 3876동, 3880동, 3881동, 3883동, 지하주차장, 헬룸2, 헬룸4 (중계장치)에 설치합니다.</li> <li>•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기계실 및 승강로 인접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 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 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p>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 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 동·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li> <li>•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일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li> <li>•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출차주의 등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과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입니다.</li> <li>• 3872, 3873, 3874, 3877동 지붕층 실외기 설치 및 부속동 외부 실외기 설치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경로당, 어린이집, 커뮤니티스트리트 지붕은 입주자 개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웰컴센터, 클라우드클럽은 입주민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인근 세대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 시기에 학교신설, 도로개설 등 택지 기반시설이 미설치, 미완성될 수 있습니다.</li> <li>• 건설규모(1,350세대) 대비 주차대수 (726대,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 4대포함)는 법적 기준대로 설치되었습니다.</li> <li>•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를 이행하여 광고물 부착 시 화성시에 신고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클라우드클럽 주변은 아파트 입주공간으로 과도한 소음발생 시 인근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li> </ul> <p><b>[A57-1블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li> <li>• 본 단지는 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부시설은 단지 외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li> <li>• 보도, 녹지,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중 작은도서관 등 일부시설은 입주 전·후 한시적으로 입주지원시설(A/S센터 등)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분 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근린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연결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간에 레벨차이(4005동, 4006동 전면부, 4002동 전면부 레벨차 약4.5M)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단차극복구조물 또는 법면 녹지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는 북서측과 남동측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2개의 레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은 평지붕이고,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li> <li>• 아파트 계단실, ELEV홀의 개폐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됩니다.</li> <li>• 각동 부계단실 바닥마감은 미장마감이며, 창호는 없습니다.</li> <li>•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세대경계벽 제외) 경량벽체로 시공 또는 단열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할 경우,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습니다.</li> <li>•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주차장 등 환기를 위한 외부 DA(환기탑) 및 부대시설 에어컨 실외기 위치에 따라 일부 저층부에 소음 및 분진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3m, 출입구 높이는 2.7m~3m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조 변경 등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상 및 지하 주차 538대(장애인 및 전기충전주차, 경차, 확장형 포함)이며, 538대중 22대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장애인 주차장 동별로 상이함)</li> <li>• 4001동 인접 근린생활시설(상가) 주변 지상주차장은 3대로 설계되어 있으며, 상가용도와 입주 민용도 별도 구분·구획이 없고, 차량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안은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와 임차인대표회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li> <li>•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일부 주민공동시설은 지자체 및 입주자 의견에 따라 외부에 위탁운영 시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어린이집 4002동~4003동 사이 위치에 있습니다.</li> <li>• 작은도서관은 4003동 7,8호라인 지하 1층에 위치합니다.</li> <li>• 주민카페는 4002동 8호라인 지상 1층에 위치합니다.</li> <li>• 청년카페는 4004동 4, 5, 6호 라인 지하2층에 위치합니다.</li> <li>• 사회적기업은 4004동 4, 5, 6, 7호 라인 지하1층에 위치합니다.</li> <li>• 공용세탁실은 4004동 7호라인 지하2층 및 4005동 1층에 위치합니다.</li> <li>• 관리사무소는 4005동 지하1층에 위치합니다.</li> <li>• 단지 내 경로당은 4004동 ~ 4005동 사이에 위치합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상가)은 단지 남측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됩니다.</li> <li>• 재활용창고는 4002동, 4004동, 4005동 주변 지하1층에 위치합니다.</li> <li>• 주방배기는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 팬이 설치되는 개별배기방식을 적용합니다. 최상층의 경우 흡출기가 근접해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p>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와 제연설비의 제연팬 및 외기 취입구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가동 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동 전후면에 소방 안전매트 전개구간에는 교목(큰키나무) 식재 불가하며, 특히 1층 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자전거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 대비 기준수량 산정 후 설계상 지정된 위치에 설치 예정입니다.</li> <li>•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함)가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 내에서 보이거나 냄새, 소음, 분진 등의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접근이 예상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위치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재료·형태·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공동시설물 사용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재활용품 보관 및 쓰레기분리수거) 등이 인접한 일부 세대는 해당 시설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상가 및 아파트 인근에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지중개폐기 및 변압기가 설치되며, 인접동 및 세대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li> <li>•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는 4002동, 4003동, 4006동 옥상 및 지하주차장(지하주차장 2층 헬룸2)에 설치될 예정이며, 서비스안테나를 지하층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단,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리침, 태양광판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li> <li>•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우수, 도시가스, 지역난방,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습니다.</li> <li>•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로비폰)를 부착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li> <li>•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여 비디오폰설비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됩니다.</li> <li>• 무인택배보관함은 각 동 1층 출입구(동별 1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p>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속충전기 1대 : 4006동 인근</li> <li>- 완속충전기 2대 : 4002동 인근</li> <li>- 과금형 이동식 콘센트 8대 : 입주자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사용은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 진행 될 예정입니다.)</li> </ul> </li> <li>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4004동 및 4005동의 경우는 지붕층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됩니다.</li> <li>저층세대는 보안 등으로 인해 세대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출차주의 등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과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li> <li>단위세대 전기 설계 부하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형 3,480VA, 21㎡형 3,630VA, 26㎡형 3,780VA, 36㎡형 4,080VA, 44㎡형 4,320VA</li> </ul> </li> <li>각 동 지붕층에는 태양광 판넬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4005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놀이터, 쓰레기보관소, 각 동 출입구 등과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li> <li>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세대내 복도창호는 설치되나 방충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16㎡형은 세탁기 설치공간이 별도로 없으므로, 단지내(4004동, 4005동) 공용(코인)세탁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li> <li>16㎡, 21㎡형은 빌트인 책상이 기본 설치됨에 따라, 책상이 설치된 위치에 스텐드형 에어컨 설치가 불가합니다. (벽걸이형 설치 가능)</li> </ul> <p>■ 마감재 및 발코니 등</p> <p>[A-54블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세대내 가구(주방가구 제외)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상하부장 후면에는 벽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세대 내·외 별도의 가스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가스를 활용한 기구(가스쿡탑 등)의 사용이 불가합니다.</li> <li>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시 등) 및 가구 등의 폭, 높이 등의 파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세대내부 벽체는 경량벽체 및 단열재가 설치되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 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li> <li>침실 및 거실 커텐박스 내부에는 고진공단열재가 설치되어 커텐봉 설치 시 단열재가 파손되어</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p>단열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3cm 이하의 나사못을 이용하여 커텐박스 고정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인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벽걸이 TV를 설치할 경우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벽걸이 TV 고정 위치는 경량벽체에 철판보강이 되어 있어 지정된 위치 외에는 벽걸이 TV 설치가 불가합니다.</li> <li>• 세대 내부 발코니에 별도의 배수구 및 급수 수전이 없어 물청소가 불가하며 건식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li> <li>• 실외기실에 비상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이 설치되어 인접세대의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는 복도 창호가 설치됩니다.</li> <li>• 21 TYPE 세대에는 전기쿡탑 2구, 냉장고, 책상, 옷장, 26 TYPE 세대에는 전기쿡탑 2구, 드레스룸, 37,44,45 TYPE 세대에는 전기쿡탑 3구, 드레스룸이 설치됩니다.</li> <li>• 단위세대 바닥 마감의 경우 일반세대는 2.0T 룬카펫을 적용하며 주거약자세대의 경우 4.5T 룬카펫을 적용합니다.</li> <li>• 일부세대 인근에 주차장 및 전기실, 기계실 등의 환기를 위한 DA(환기탑)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냉장고는 21TYPE에만 설치됩니다.</li> <li>• 세대 내 별도의 에어컨 및 에어컨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li> </ul> <p><b>[A57-1블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팜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li> <li>•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li> <li>• 세대 내 욕실의 단차는 물빠짐을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장재는 PVC 판넬로 시공되며 천장에 점검구 시공 예정입니다.</li> <li>• 전동 복도 양 끝에 완강기는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li> <li>•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li> <li>• 발코니 선반은 각 형별에 따라 폭이 상이할 수 있고, 높이조절·접힘·걸침기능이 가능한 시스템 선반이 설치되며 과도한 중량물 사용 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li> <li>•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1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뽀칠로 시공됩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입니다.</li> <li>•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li> <li>•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주거약자세대 4004동(1,2호 세대 1층~13층),(5~10호 세대 1층~8층) 세대 거실1개소에 설치됩니다.</li> <li>•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li> <li>• 세대 내 통합관리반(전기분전반+통신단자함)은 현관 또는 주방에 매입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매입 다운라이트로 설치되며 위치이동은 불가능합니다.(16㎡형,21㎡형, 26㎡형,36㎡형,44㎡형)</li> <li>•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됩니다.</li> <li>• 발코니 조명기구는 천장등(16㎡형,21㎡형,26㎡형)으로 설치됩니다.</li> <li>• 발코니 조명기구는 벽부등(36㎡형,44㎡형)으로 설치됩니다.</li> <li>•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벽부등(16㎡형,21㎡형,26㎡형,36㎡형,44㎡형)으로 설치됩니다.</li> <li>• 무선랜(무선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입주 후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 지지 않습니다.(부대시설에 한함)</li> <li>•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내에 환기창은 전층 설치되나,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야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이사 시 사다리차 사용 불가하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세대 내 발코니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PL외창이 설치되어 있어 사다리차 사용 시 하중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우려)</li> <li>•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전 및 콘센트, 스위치, 조명기구 등의 임의 위치 이동 등)</li> <li>•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 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 개인의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E/V홀, 현관, 발코니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 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 될 수 있습니다.</li> <li>•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p>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 및 급탕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 설치 위치:1개소(4001동,4006동 인근)]</li> <li>•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li> <li>•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됩니다.</li> <li>• 세대 내 조명기구는 LED램프가 적용됩니다.</li> <li>• 거실에어컨 콘센트는 벽걸이형(16㎡형,21㎡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li> <li>• 거실에어컨 콘센트는 스탠드형(26㎡형,36㎡형,44㎡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li> <li>•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및 세탁실에는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 선흡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흡통의 위치와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li> <li>•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li> <li>• 세대현관문 도어락은 열쇠타입입니다.</li> <li>• 세대내 욕실은 조립식욕실로 시공됩니다.</li> <li>• 세대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에어컨 실외기실에 환기용 유니트가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에어컨 설치를 위한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실외기실과 발코니 바닥배수 설치위치와의 이격거리가 있어, 에어컨 가동시 발생하는 응축수가 발코니에 방류되어 배수트랩으로 이동됩니다.</li> <li>•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됩니다.</li> <li>• 모든 세대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시공되지 않으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에 비상탈출구(세대칸막이)가 설치되며, 부수고 탈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p>■ <b>학교관련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학교개교 시기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학교 설립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에 따라서 개교시기가 지연 또는 설립 취소될 수 있습니다.</li> </ul> <p><b>[A-54블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생은 (가칭)동탄18초를 신설하여 배치할 계획이나 교육부 승인 요건에 맞춰 신설을 추진</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p>중인 상황으로, 개교시기까지 사업시행사가 제안한 통학안전대책에 따라 화성신동초등학교에 임시 배치할 계획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학생은 동탄2-2중학군[방교중, 청림중, 서연중, 동탄목동중, 화성세정중, 동탄9중(2025.03월 개교 예정)]에 배치할 계획입니다.</li> <li>고등학생은 화성시 관내 기존 및 신설예정교에 배치 가능하나 향후 개발계획 변경 또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학생배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배치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p><b>[A57-1블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학생은 초23에 배정될 예정이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향후 교육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상정하여 일정을 정할 예정이므로, 사업승인조건에 의하여 임시로 타 초등학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li> <li>중학생은 동탄2-2중학군[목동중, 청림중, 방교중, 서연중]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추후 설립되는 중학교(중8, 중9 등)를 포함한 학생 배정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화성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고등학생은 택지지구내 학교[창의고, 정현고, 서연고, 한백고, 동탄중앙고, 이산고 등]뿐만 아니라 화성시 관내 고등학교도 진학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b>■ 일반 사항[공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b></li> <li>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li> <li>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주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구를 방문하여(현장은 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li> <li>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li> <li>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b>입주 후 리모델링 등 불법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공급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b></li> <li>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본 단지는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며, 팸플릿을 참고하여 청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li> </ul>

## 11.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A-54블록]

#### ■ 공동주택성능등급

##### 1)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3. 화장실 급배수소음	★
4.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5.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2) 구조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가변성	★
2.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3.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3. 내구성	★★
4.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주요구조부 재사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5.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비내력벽 재사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4) 생활환경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 5) 화재소방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 ★로 해당 등급 표시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A57-1블록]

■ 공동주택성능등급

\* 2019.12.31 전 사업승인 신청 현장으로 해당사항 없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	-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화성동탄2 A-54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금호건설(주) 대상건설(주) ㈜세영이앤지 남광전기㈜ ㈜성호넷 태양방재산업㈜ 대우조선해양건설㈜	-	㈜케이디엔지니어링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지에스엠엔지니어링 ㈜해우엔지니어링 ㈜삼진탐테크엔지니어링
화성동탄2 A57-1블록		건축,토목,기계, 조경	-	-
		요진건설사업(주), 한양산업개발(주), 부광건설(주), 대방(주)		
		전기,통신		
		플랜트서비스(주), 중앙이엔에프(주)		

###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24.11.25(월)~11.27(수)**]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또는 **공사양식** 참고
- ▶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4.11.27(수)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화성동탄2 A-54A57-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중복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경 사 로) 마루귀틀에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비디오폰) 바닥에서 1.2m 이내	
	(시각경보기) 세대별로 설치	청각장애인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부엌	(좌식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에서 1.2m 이내 높이로 조정	
욕실	(세 면 기) 높낮이 조절용 설치	
	(수건걸이) 1.0~1.2m 높이로 조정	
침실	(조명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위해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주방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거실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	청각장애인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	
기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시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임대문의 및 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상담 : 031-250-8483 (※ <b>임시번호로 '24.7.16까지만 상담가능, 이후 연결불가</b>)</li> <li>• 콜 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li> <li>• 인터넷 - 마이홈포털 (<a href="https://www.myhome.go.kr">https://www.myhome.go.kr</a>) - LH청약플러스 (<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li> </ul>
당첨자 ARS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 C : LH청약플러스(<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li> <li>·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li> </ul>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http://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